

인천대학교 개방형 직위(사무처장) 공개모집

인천대학교 개방형 직위(사무처장)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인천대학교 총장

1. 채용 직위 개요

가. 직위명 및 주요 업무

직위명	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1급 상당 계약직	1명	○ 인천대학교 총무, 인사, 회계, 재무 총괄 업무 - 대학 간부로서의 대내 현안사항 처리 - (총무)직원 복무관리, 교직원 급여, 직원 후생복지 - (인사)직원 인사 관리/역량 강화, 노무 관리 - (회계,재무)대학 회계, 재산, 물품 관리 등

나.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2년)

- 1) 최초 근무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2차년도 재계약 여부 및 연봉액 결정

2. 지원자격

가. 필수요건: 본교 인사 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구 분	자격요건
학력 및 경력	석사 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박사 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 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및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 직원으로서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기준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행정 또는 일반행정 업무(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경력 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서류 전형 시 심사 및 결정

〈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총무, 인사, 노사, 회계, 재무 등 행정 전반 분야
경 력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음.

※ 경력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3.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가.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구 분	세 부 사 항	합격예정인원
서류전형	1) 전형대상: 지원자 전원 2) 평가요소: 지원자격 적격 여부, 자기소개서 등 3) 평가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자 불합격 처리. · 지원자격 충족자가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예정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7배수 이내
종합면접	1)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2) 평가요소: 본교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가 3) 평가기준 ·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점수 합계가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불합격	1명

나. 동점자 처리 방법

구 분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전형	(1순위)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 경력이 많은 자 선발 (2순위) 서류전형 평가 항목 중 “직무수행 적합도” 총점이 높은 자 선발 (3순위) 서류전형 평가 항목 중 “경력 관련도” 총점이 높은 자 선발 (4순위) 위 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면접전형	(1순위)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 경력이 많은 자 선발 (2순위) 면접 평가 항목 중 “전문가적 능력” 총점이 높은 자 선발 (3순위) 면접 평가 항목 중 “조직관리 능력” 총점이 높은 자 선발 (4순위) 동점자 대상으로 위원간 재심의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각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다. 전형 일정 및 장소: 2025. 9월 중(대상자 개별 통지 예정),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라. 합격자 발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접수 일정 및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 2025. 8. 11.(월) ~ 8. 25.(월) 17시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 방문접수

- 접 수 처: 인천대학교 사무처 인력개발팀(대학본부 4층 413호)
- 접수시간: 9:00 ~ 17:00

2) 우편접수

- 주소: (22012)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인력개발팀
- 접수 마감시간(8/25(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 ※ 본교 양식 및 개인별 경력/재직증명서

- 1) 응시원서 1부 ※ 본교 양식
- 2) 이력서 1부 ※ 본교 양식
- 3) 자기소개서 1부 ※ 본교 양식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본교 양식
-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본교 양식

-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본교 양식
- 7)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본교 양식
- 8) 응시자 결격사유 확인서 ※ 본교 양식
- 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본교 양식
-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등 필수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경력은 경력기간 미인정

나. 기타 서류(해당시 제출)

- 1) 직무 분야 경력 확인서 1부 (별지서식1)

※ 사무처장 직무 관련 분야 경력 증빙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직무 관련 분야 경력 미인정

- 1) 최종 학력 학위증 사본 1부 (자격 요건(학력) 증빙시 제출)
- 2) 실적 입증자료 사본 1부 (실적 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출)
- 3) 기타 (※ 자기소개서에 내용 입력한 경우에 한함)
 -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1부 등

다.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 관련 증빙서류에 근무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근무·연구 경력 및 사무처장 직무 관련 경력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임용 신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신분

- 1) 임용 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관련 인사 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보수 수준

- 1)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관련 인사관리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기준을 참고하여 책정하되, 성과 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 조정 가능
- 2)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 발췌(2025.1.)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9,296

7.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시험 실시 결과,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최종 합격 후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원서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채용 계획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 본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아.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대학교 인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835-9372, 평일 9시~17시)

- 채용서류 반환 -

- 신청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recruit@inu.ac.kr)
-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3.29., 2019.5.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3.29., 개정 2019.5.24.>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19.3.29., 개정 2019.5.2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9.3.29., 개정 2019.5.24.>

10.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3.29., 개정 2019.5.24.>

11.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3.29., 2019.5.24.>